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관련 알림

1. 관련 : 「식품위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의6
2.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라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 의무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각 시·도는 아직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식품위생감시원이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과정명	인정시간	교육기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e-learning.nhi.go.kr)	식품위생법 기본파악하기	5.5	~'23.12.24.
	식품위생감시 기본과정	3.5	

※ 신규 감시원의 경우에는 미이수 사유를 기록·관리하고, '24년 상반기 중 교육을 반드시 이수

4. 아울러, 각 시·도에서 임명한 식품위생감시원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시원증을 즉시 반납 받는 등 감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위생정책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위생정책과장), 대전광역시(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식품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보건식품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증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품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품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품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주무관 류화연 보건연구관 이선규 식품관리총괄과장 박동희
전결 2023. 11. 30.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10004 (2023. 11. 30.) 접수 식품정책과-33160 (2023. 11. 30.)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관리총괄과 / www.mfds.go.kr
전화 043-719-2059 /전송 043-719-1900 / rhy0819@korea.kr / 비공개